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21 선고 2020가단224021 판결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연, 담당변호사 구찬희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철

변론 종결 2022. 6. 16.

판결 선고 2022.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26,760,000원

나. 위 가 · 항 기재 금원 중,

1) 1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8,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2. 7.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3,76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등록된 별지 기재 선박(2004년식 12인승 모터보트,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선박은 'C'라는 상호로 선박보관소를 운영하는 피고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는 D이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원고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다.

계약금	오백만원	지급일자	2020년 1월 14.일
중도금	이천오백만원	지급일자	경비 완료 후 시운전 후
잔금	오천만원	지급일자	해상 계류 인도 후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는 "상기 선박은 2020. 1. 31. 이내로 부산 내 매수인이 지정한 해상 계류장에서 해상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매매계약 제3조는 "이 사건 계약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시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며, 매수인 또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시 지급된 금액을 포기한다. 단 정비완료 후 시운전 시 선박의 중대결함 선박누수 엔진가동불가, 발전기 사용불가 등이 생길 시에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제3조를 '이 사건 해제조항'이라 한다). 또한 제8조는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 ㄱ) 배 선저 A/F 도장 및 선체 광택(부분 크랙포함)
- ㄴ) 선수(썬베드) 및 콕핏 테크 누티크(인조나무) 시공
- ㄷ) 외부 냉장고 교체, 3축 알루미늄 트레일러 포함.
- ㄹ) 엔진 룸 청소 및 내외부 실리콘 파손부위 재시공.
- ㅁ) 선박 인도시 2018년~2020년 선박 수리내역을 제공한다.

라. 원고는 2020. 4. 29. 피고에게 중도금 2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선박은 2020. 3. 16. 이후 부산 E 계류장(F)에 계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20. 10. 15. 위 계류장에서 이 사건 선박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선체 광택', '엔진 룸 청소', '수리내역 제공' 등의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중도금 25,000,000원은 피고가 위 선박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거쳐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특약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선박은 최초 시운전할 당시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운항 중 시동이 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여러 차례에 걸친 수리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선박을 임의로 회수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해제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위 선박을 점유하는 동안 시트교체비 등으로 3,76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회수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현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본 증거, 갑 제3, 4,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정비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선박에 관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리내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고도(이 사건 특약사항),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16년 정도 된 중고제품이고, 피고도 이 사건 선박을 중고로 구입하였으며, 구입 당시부터 해당 기간 동안의 수리내역에 관한 자료는 받지 못했기에 존재하지도 않는 수리내역을 교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피고의 2022. 3. 16.자 준비서면 2/5쪽), 이 사건 특약사항에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선박 수리내역을 제공'하기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수리내역을 제공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정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선박은 매매일로부터 17일 내인 2020. 1. 31.까지 원고가 지정한 부산 내 해상 계류장에서 해상 인도되어야 하고, 중도금 25,000,000원은 피고가 위 선박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거쳐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위 선박을 부산으로 인도하지 않아 원고는 위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2020. 1. 중순경 2회에 걸쳐 이 사건 선박이 계류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전곡항으로 가야 했고, 전곡항에서 시운전을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여 2020. 2. 15.까지 부산에서 인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2020. 2. 29.경 부산에서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선박은 2020. 3. 16.이 되어서야 부산 E에 있는 F에 인도되었다. 원고는 다음 날인 2020. 3. 17. 이

사건 선박의 시동을 걸어보았으나 엔진이 작동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인 18. 다시 시동을 걸어보았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2020. 3. 21.에는 엔진이 정지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선박 수리와 관련하여 "인도 후 3개월 이내 선박 누수 및 엔진교체, 발전기 교체 등 치명적 결함 발생 시 매도인은 즉각 수리를 하여야 하며, 수리가 되지 않을 시 매수인이 수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매도인이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시운전 중 엔진이 정지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자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 수리를 하겠다며 이 경우 약 550만 원 내지 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자신이 다시 정비를 하겠다며 원고가 업체를 통해 수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0. 6.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선박은 여전히 누수, 엔진시동 불능, 배수펌프 작동불능으로 인한 엔진룸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20. 8. 11.과 2020. 8. 15. 이에 대한 수리를 거듭 요청하고, 2020. 10. 4.경에도 특약사항의 이행(도장 및 선체 광택, 엔진룸 청소 및 내외부 실리콘 파손부위 재시공) 및 알피엠(RPM) 게이지 등의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3. 16. 혹은 늦어도 2020. 6. 3.까지는 수리를 완료하고 이 사건 선박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 8.경에도 이 사건 선박의 시동이 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와 중도금 및 잔금을 61,000,000원으로 정산하여 그중 40,000,000원은 6월 말까지, 나머지 21,000,000원은 8월 말까지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20. 10. 15. 이 사건 선박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원상회복으로 15,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중도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2) 이 사건 해제조항에 따라 예정된 손해배상액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해 피고는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8,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콘트롤 레버 및 안테나 구입비용, 화장실 탱크의 배출펌프 교체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도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을 오가며 수리를 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8,000,000원으로 감액한다.

다. 또한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위 선박을 점유하는 동안 청소비용으로 800,000원, 시트교체 비용으로 1,000,000원, 계류비용으로 1,9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선박에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60,000원(=800,000원 + 1,000,000원 + 1,96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760,000원(= 15,000,000원 + 8,000,000원 + 3,760,000원)과 그중, 1) 원상회복으로 인한 1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손해배상액 8,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3) 부당이득액 3,760,000원에 대해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노행남

별지